

##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 정보) 제공 동의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신청인	대상 구분	보훈번호	성명
	주소	전화번호	

신청인과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	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<sup>1)</sup> (서명 또는 인)	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<sup>2)</sup> ※ 부동의 시 우편통보(주소·전화번호 작성)	
				서명 또는 인	주소 및 전화번호
동의를 (신청인 및 부양 의무자)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		-			

정보제공 목적	<input type="checkbox"/> 생활조정수당 수급 대상 여부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
---------	---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2항·제14조의4·제22조제4항·제63조의2 제2항·제68조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·제34조의2·제84조의3·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·제11조의2·제16조의2·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및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, 부모, 자녀 및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**금융회사등의 장**  
**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** 귀하

- 1)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이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2)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(만약 동의하지 않으면,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).
- 3)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: 뒤쪽 참조
- 4) 정보제공 목적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
- 5)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: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### < 금융회사 등의 명칭 >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
  - 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나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다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마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- 바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- 사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- 아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 - 자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 - 차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 - 카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 - 타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파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- 하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기관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

○ 전국은행연합회 등

### < 금융정보등의 범위 >

1. 금융정보
  - 가.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: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
  - 나. 정기예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잔액 또는 총 납입액
  - 다.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시세가액(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)
  - 라.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 증서, 양도성 예금증서 : 액면가액
  - 마.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2. 신용정보
  - 가.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 - 나. 신용카드 미결제금액
3. 보험정보
  - 가. 보험증권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 - 나. 연금보험 :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

### 유의사항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동의서 제출을 거부·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 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